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조 (계약목적)

- * 지역사회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3조 (서비스 제공시간)

- * 장기요양서비스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계약시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공시간은 부득이한 경우 혹은 협의 후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는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4.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 자부담 및 수가는 고시사항에 따르며, 비급여는 이동급식업체와의 계약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6조 (계약의 해제)

- *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한 경우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센터 이용 수급자 및 시설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5. 고의적 혹은 자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7. 계약 시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 허위일 경우
 8. 계약해지 된 후 센터와 재계약 시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9. 센터의 각 사업별 이용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0. 변경된 계약양식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1. 이용계약과 다르게 일정변경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12. 주야간보호사업은 단체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사항과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13. 이용자가 직원, 이용자 등에 대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

제7조 (서비스 제공자 의무)

*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고시 내용을 지침으로 기관은 최선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을 의무

제8조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를 의무 납부한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한다.
3. 방문요양 및 목욕 서비스 전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각 사업의 급여제공 계약시 안내한 이용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5. 서비스제공자에게 업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요청하거나 지시하지 않아야 한다.

